

第20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7.11.16. ~ 11.2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0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 I. 개회식 .....3
- II.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 III.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 ..... 21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1
  -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1
  - 5. 조례심사보고서 ..... 47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0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부웅 위원 외 4인 발의)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의장 성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효겸 부교육감과 최태호 교육정보화과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이러닝 교육 행정서비스 혁신대회 참석차, 하재성 중등교육과장과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수학능력시험지 인계차, 김용환 총무과장께서는

[제209회-제1차 본회의]

연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웅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안전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전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전접수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8일 김부웅 교육위원 외 4인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0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성영웅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겠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은 휴일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1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성영웅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오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의정활동비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위원 사무실에 들른 기자 한 분이 “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며, 위로하는 뜻

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판단보다는 일부 지역의 기초의회만 못한 대우를 받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는 느낌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물론, 기초의회도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만 제 가슴에 달려있는 배지가 어떤 배지인가요. 국회의원은 붉은 바탕에 금색 원으로 되어 있고, 광역 의원은 노란 바탕에 붉은 원으로 되어 있고, 기초 의원은 노란 바탕에 흰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광역 의원의 배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도 단위급 간부님들도 기초의원 의 대우를 받는 저희들에게 모든 심의를 받는 데 대해서 상당한 자존심이 훼손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제제하다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단돈 만원이라도 알뜰히 쓰도록 따져보겠다는 생각으로 깨알 같이 아주 작은 글씨로 작성된 예산안을 밤늦도록 검토해 보기도 했고, 각계각층의 교육가족을 면담하면서 행정감사나 행정질의를 통해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 등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해 왔으며, 회기는 60일이라고 해도 출장 처리도 없이 위험을 감소하면서 각 지역의 행사에 수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또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꿈임없이 순회해도 여비 보조 한푼 없이 일을 해왔으며, 광역의원처럼 후원금 제도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차라리 무보수 봉사직일 때가 자존심이나 높이가질 수 있었다는 동료 위원의 말씀을 들으며 많이 섭섭해 왔음을 솔직한 소감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청 간부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제 값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함께 일하고 노력하자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심의 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월 18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 의장 성명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부웅 교육위원회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 ● 의장 성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폐지,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과 지번정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 등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원군에 비봉유치원과 충주시에 충주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국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며 충주시에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9월 1일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충주 강서 1지

구 서현초등학교를 2008년 9월 1일자로 충주 연수토지구획지구내 국원초등학교, 충주 성화1지구 개발지구내 성화중학교를 2008년 3월 1일 개교하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라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번 정정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으로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원, 사천초등학교 외 4개교, 회인중학교 외 1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과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인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부모

위원의 당연 퇴임사유인 학생이 전학 퇴학 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중인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의 당연 퇴임사유에 휴학을 추가하며, 둘째로 의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며, 셋째로 현재의 학교급식에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 의장 성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병우 위원님과 김부용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 本 會 議 會 議 錄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부웅 위원 외 4인 발의)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재성 중등교육과장께서는 자율학교 평가차,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께서는 직업진로연찬회

참석차,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점검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

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 정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던 바,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

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폐지,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지번 정정 및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유치원 신설로 비봉유치원은 오창산업단지 내 입주에 따른 취원 대상아 수용을 위하여 기존 병설유치원 시설을 증축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오창지역의 부족한 유아교육 시설 확충으로 유치원생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서현초병설유치원 및 국원초병설유치원은 서현초가 2008년 9월 1일자, 국원초가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추진을 통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원하는 것이며, 충주중앙초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잉여교실 활용으로 2008년 3월 1일 병설유치원을 개원함으로써 유아들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신설로 서현초등학교는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자 당초 2008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공동주택 입주시기가 2008년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개교 시기를 2008년 9월로 연기하여 설립하려는 것이고, 국원초등학교는 충주 연수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자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설립

하려는 것이며, 성화중학교는 청주 성화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자 당초 200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학교부지 도시기반시설의 사용 가능시기가 2007년 9월 이후로 통보되어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명 변경으로 금왕공업고등학교는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충북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주소지 변경으로 사천초등학교 및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현재 사천동 26-1 지번에서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위치한 사천동 26-2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초병설유치원, 속리초병설유치원, 회인초병설유치원, 수정초, 수정초삼가분교장, 속리초, 회인초, 회인중, 속리중학교 등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외속리면이 장안면으로, 회북면이 회인면으로, 내속리면이 속리산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폐지에 있어서는 비봉초등학교 및 오창초유리분교장 병설유치

원의 경우 각각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과 오창초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은 1학급에 3명, 가좌분교장은 2학급에 11명이 재학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 많은 학생이 있는 또래 집단 속에서 폭넓은 인격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성 신장 및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오창초등학교로 통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부모 위원의 당연 퇴임 사유인 학생이 전학, 퇴학, 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한 경우를 당연 퇴임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재학중인 학부모에 한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사결정 시 가부동수인 경우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운영

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위원회 설치 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실시와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신설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의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 조리 중심 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행정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정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

(11시 14분)

● 의장 성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하게 되면 올해 연간 회의 일수 50일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간을 연장하여 앞으로 각종 안건 심의에 필요한 회의일수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10일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09회-제2차 본회의]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 다.  
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용, 서수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12.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김 병 우 김병우

위 원 김 부 응 김부응

의사국장 박 경 석 박경석



(별첨 1)

# 의 사 일 정 (안)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11. 16. ~ 11. 20.(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1월 16일(금)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11. 16. ~ 11. 20. (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11월 17일(토)	<input type="checkbox"/> 휴무일	본회의 휴회
11월 18일(일)	<input type="checkbox"/> 휴무일	본회의 휴회
11월 19일(월)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회
11월 20일(화)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09-1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부웅 위원 외 4인
발의연월일	2007년 11월 8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9-1
----------	-------

발의연월일 : 2007. 11. 8.  
발 의 자 : 김부웅, 곽정수,  
김병우, 서수용,  
정 무 (5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850,000원으로 함 (안 제3조제1항)

## 참고자료

- 가.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나. 관계법령 발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200,000원” 을 “월 1,8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u>1,200,000원</u>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u>1,850,000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한 범위
- 월정수당 : 월 185만원(연간 2,220만원)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급 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보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구 분								
시·도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09-2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09 회)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11월 8일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9-2
----------	-------

제출연월일 : 2007. 11. 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2008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 신설과,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라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주소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분교장 폐지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08학년도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중학교 1개교 신설

### (1) 단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 원 연월일	설립사유
비봉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공교육 기반조성

### (2)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 원 연월일	설립사유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2008.9.1.	공교육 기반조성
충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2008.3.1.	공교육 기반조성
국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2008.3.1.	공교육 기반조성



(3)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월일	설립사유
서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2008.9.1.	강서1지구 유입학생수용
국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2008.3.1.	연수토지구획지구 유입학생수용

(4)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월일	설립사유
성화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	2008.3.1.	성화1지구 유입학생수용

나. 전문계 고등학교 교명 변경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위 치	변 경 연월일	변경사유
금왕공업 고등학교	충북반도체 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2008.3.1.	반도체관련 학과 특성화

다. 학교 주소 변경

(1) 병설유치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지번 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2	
수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번지	
속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회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96번지	

(2) 초등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사천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2	
수정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번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140번지	
속리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회인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96번지	

(3) 중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회인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30번지	
속리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번지	

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분교장 2개교 폐지

(1)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2008.3.1.	오창초등학교 통·폐합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단설유치원 전환

(2) 초등학교분교장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2008.3.1.	오창초와 통합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29번지	2008.3.1.	오창초와 통합

**참고자료**

가. 입법예고(2007. 9. 28. ~ 2007. 10. 1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의 회인중학교 위치란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속리중학교 위치란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명칭란중 산남중학교란 다음에 성화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성화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번지
-------	------------------------

별표 4의 사천초등학교 위치란중 “26-1번지”를 “26-2번지”로 하고, 수정초등학교 및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위치란중 “내속리면”을 각각 “속리산면”으로, 속리초등학교 위치란중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인초등학교 위치란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며, 명칭란중 서경초등학교란 다음에 서현초등학교를, 충주중앙초등학교란 다음에 국원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 및 오창초등학교가좌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서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국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별표6의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26-1번지”를 “26-2번지”로 하고, 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속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며, 명칭란중 충주남산유치원란 다음에 비봉유치원을, 서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충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병설유치원 및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비봉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충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중 서현초등학교, 별표 6중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별표 1]

### 고 등 학 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금왕공업고등학교	(생 략)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현행과 같음)

[별표 3]

### 중 학 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회인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	.....회인면.....
속리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편리 87번지	.....	.....속리산면.....
산남중학교	(생 략)	.....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신 설 >	성화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번지

[별표 4]

### 초 등 학 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사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	.....26-2.....
수정초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	.....속리산면.....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	.....속리산면.....

속리초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u>외속리면</u> 장내리 243번지	.....	.....장안면.....
회인초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u>회북면</u> 중앙리 96번지	.....	.....회인면.....
서경초등학교	(생략)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서현초등학교</u>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충주중앙초등학교	(생략)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국원초등학교</u>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u>오창초등학교</u> <u>유리분교장</u>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삭제>	<삭제>
<u>오창초등학교</u> <u>가좌분교장</u>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29번지	<삭제>	<삭제>

[별표 6]

유치원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	.....26-2.....
수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u>내속리면</u> 사내리 181번지	.....	.....속리산면.....
속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u>외속리면</u> 장내리 243번지	.....	.....장안면.....
회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u>회북면</u> 중앙리 96번지	.....	.....회인면.....
충주남산유치원	(생략)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비봉유치원</u>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서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생략)	.....	(현행과 같음)

<p>&lt; 신 설 &gt;</p> <p>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p>	<p>(생 략 )</p>	<p>서현초등학교병 설유치원</p> <p>.....</p>	<p>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p> <p>(현행과 같음)</p>
<p>&lt; 신 설 &gt;</p>		<p>충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p>	<p>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p>
<p>오창초등학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p>	<p>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p>	<p>&lt; 삭 제 &gt;</p>	<p>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p>
<p>비봉초등학 교 병설 유치원</p>	<p>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p>	<p>&lt; 삭 제 &gt;</p>	



(별첨 4)

의안번호	제 209-3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09 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11월 8일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9-3
----------	-------

제출연월일 : 2007. 11. 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급식관련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생이 전학·퇴학·졸업인 경우)에 휴학을 추가함.(안 제7조)
- 나.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 다.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안 제17조제1항)

##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1호중 "학생이 전학·졸업·퇴학"을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3조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의 퇴임등)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u></p> <p>1. <u>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u></p> <p>2. (생략)</p>	<p>제7조(위원의 퇴임등)--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1. -----<u>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u>-----</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④(생략)</p> <p>⑤<u>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⑥(생략)</p>	<p>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④(현행과 같음)</p> <p>⑤-----</p> <p>-----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u>-----.</p> <p>⑥(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u>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p>	<p>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p> <p>----- <u>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u></p>
<p>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u>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단서신설&gt;</u></p> <p>②(생략)</p>	<p>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p> <p>-----.</p> <p>----- <u>다만, 급식 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5)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11.20. 11:00)

##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6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1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1월 19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 가. 제안이유

○ 2008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 신설과,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라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주소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 분교장 폐지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학교 설립

- 단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원연월일	설립사유
비봉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공교육 기반조성



-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 원 연월일	설립사유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2008.9.1.	공교육 기반조성
충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2008.3.1.	공교육 기반조성
국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2008.3.1.	공교육 기반조성

-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월일	설립사유
서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2008.9.1.	강서1지구 유입학생수용
국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2008.3.1.	연수토지구획지구 유입학생수용

-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월일	설립사유
성화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	2008.3.1.	성화1지구 유입학생수용

○ 전문계고등학교 교명 변경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위 치	변 경 연월일	변경사유
금왕공업 고등학교	충북반도체 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2008.3.1.	반도체관련 학과 특성화

○ 학교 주소 변경

- 병설유치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2	
수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번지	
속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회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96번지	

- 초등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사 천 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2	
수 정 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번지	
수 정 초등학교 삼가분교장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회 인 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96번지	

- 중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회인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30번지	
속리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번지	

○ 학교 폐지

-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2008.3.1.	오창초등학교 통·폐합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단설유치원 전환

- 초등학교 분교장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2008.3.1.	오창초와 통합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29번지	2008.3.1.	오창초와 통합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비봉유치원은 오창산업단지내 입주에 따른 취원대상아 수용을 위하여 4학급 규모의 기존 비봉초병설유치원 시설을 증축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족한 유아교육 시설 확충하여 오창지역 유치원생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서현초병설유치원 및 국원초병설유치원은 서현초가 2008. 9. 1.자로 개교하고, 국원초가 2008. 3. 1.자로 개교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추진을 통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원하는 것이며,
- 충주중앙초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하여 공립유치원을 개원하여 공립유치원 취원 확대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추진을 통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원하는 것임
- 서현초등학교는 2006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동주택 입주 시기가 2008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개교 시기를 2008년 9월로 연기하여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 국원초등학교는 2006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 연수토지구획정리지구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 성화중학교는 당초 2007.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성화1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포장, 우오수,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의 사용가능 시기가 2007. 9월 이후로

통보되어 2007년 9월까지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교 시기를 2008년 3월로 연기하여 청주 성화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 금왕공업고등학교(변경 학교명 :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특성화 영역을 학교 명칭에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명 변경임
- 사천초등학교 및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현재 동 조례에 등재된 위치는 학교 담장 밖 도로부지의 지번(26-1)으로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위치한 지번(26-2)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수정초병설유치원, 속리초병설유치원, 회인초병설유치원, 수정초, 수정초삼가분교장, 속리초, 회인초, 회인중, 속리중학교 등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7. 8. 13. 공포, 2007. 10. 1. 시행)으로 “외속리면“이 “장안면“으로, “회북면“이 “회인면“으로, “내속리면“이 “속리산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현재 병설유치원 시설을 증축하여 단설유치원(비봉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오창초유리분교장병설유치원은 오창초로 통합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임
-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은 1학급에 3명(3복식 1학급), 가좌분교장은 2학급에 11명(3복식 1학급, 2복식 1학급)이 재학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 많은 학생이 있는 또래 집단 속에서 폭넓은 인격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성 신장 및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오창초등학교로 통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6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1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1월 19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 가. 제안이유

- 급식관련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생이 전학·퇴학·졸업인 경우)에 휴학을 추가함.(안 제7조)
-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안 제17조제1항)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부모 위원의 당연퇴임 사유인 학생이 전학, 퇴학, 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한 경우를 당연퇴임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재학중인 학부모에 한 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인 경우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 학교운영위원회 안전 심사의 효율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위원회 설치시 급식관련 부조리 예방과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실시와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신설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 안 제17조 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 5. 수정안 주요 내용

###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수정 주요 골자

- 안 제17조 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11. 20.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안중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사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7조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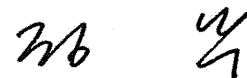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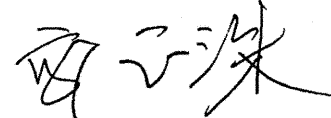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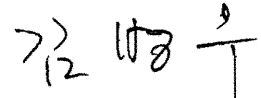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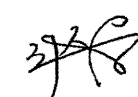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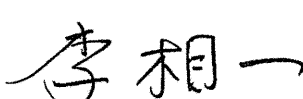
##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u>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u>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u>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u>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7. 11. 20.

###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 무 
간사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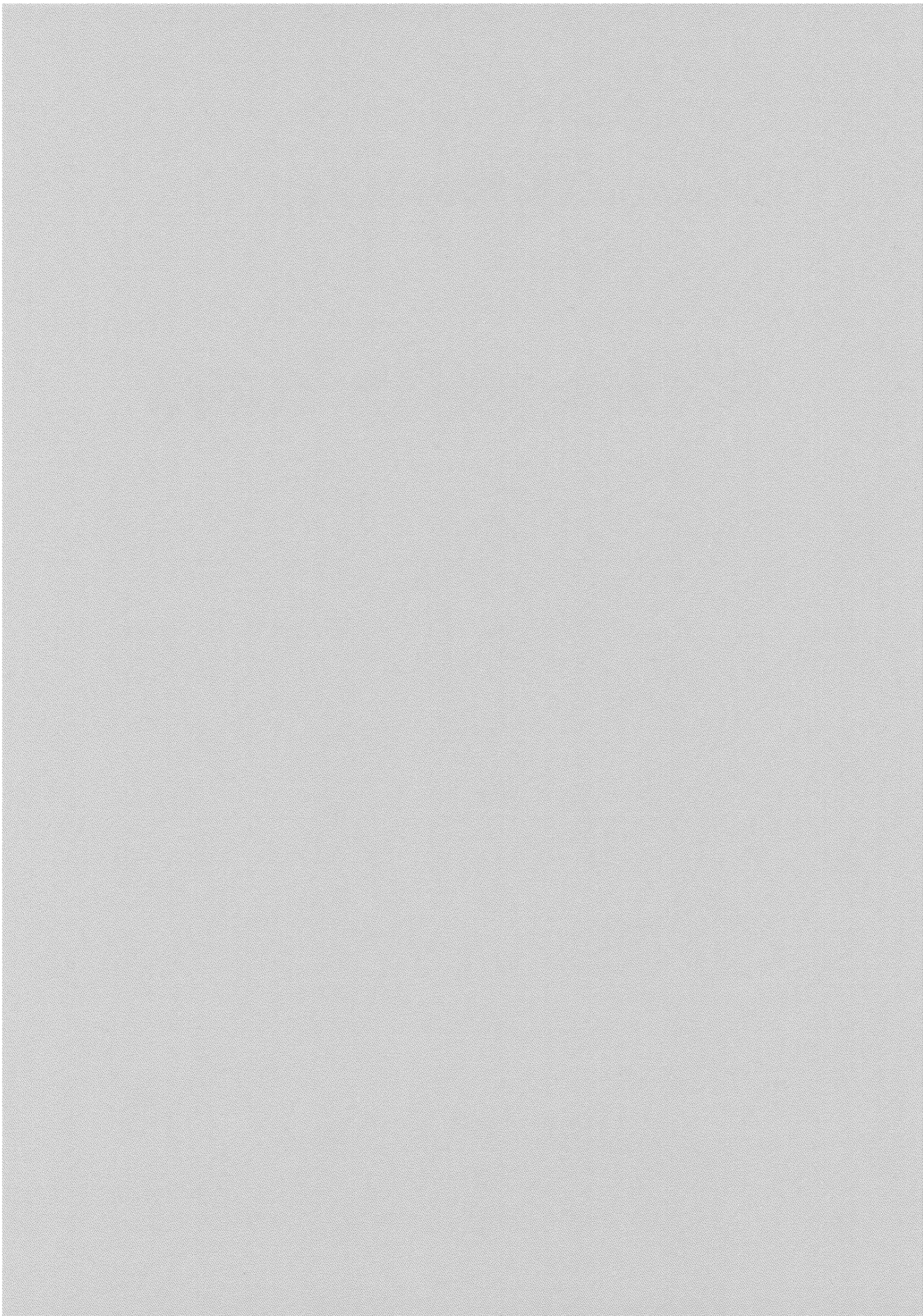


第20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65
II.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69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89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11시 22분

## 議事日程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2분 개의)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정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정무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무

제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 위원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4분)

● 위원장 정무

이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간사로곽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무

그러면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소위원회가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5분)

●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11월 19일 월요일 2일  
간으로 하여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9  
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  
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정 무, 간사곽정수,  
위 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19일 (월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20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審查된 案件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심사와 관

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주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히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1분)

● 위원장 정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폐지,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른 학교 명칭변경과 지번정정,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 등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원군에 비봉유치원과 충주시에 충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국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며, 청주

시에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9월 1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주 강서1지구 서현초등학교를 2008년 9월 1일자로, 충주 연수토지구획지구내 국원초등학교, 청주 성화1지구개발지구내 성화중학교를 2008년 3월 1일자 개교하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화에 따라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번정정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으로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3개 유치원, 사천초등학교외 4개교, 회인중학교외 1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과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인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광정수**

교육위원 광정수입니다.

지금 교명에 관해서 보니까 서현초등학교가 경기도 분당에 서현초·중·고가 있는 걸로 되어서 명칭이 시·도를 달리하지만 지장이 없는지, 하긴 제가 아는 예로는 중앙초등학교는 전국에 아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기존의 있던 학교고 신설되는 학교는 교명이 중복되는 문제가 괜찮은지, 또 하나는 성화중학교도 대구에 사립학교 중에 성화중학교가 있는 걸로 본인이 기억하는데, 이런 신설 학교에 물론 시·도를 달리하지만 중복되는 교명에 대해서는 별 관계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교명이 전국에 여럿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덕산초등학교 그러면 진천덕산초등학교도 있고 제천에 덕산초등학교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앞에 지역명을 붙이고, 또 중앙초등학교나 이런 경

우에도 전국적으로 중앙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주중앙초등학교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현초등학교의 경우도 경기도에도 있고 저희들 신설학교에도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하는 서현초등학교는 지명에 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가장 수요자가 많은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개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명을 따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찾기가 쉽게 하고 이렇게 관례상으로 많이 해왔으나, 요 근래에 와서는 주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아마 청주시교육청에서 공고를 해서 가장 공모수가 많은 그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혼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현초등학교로 그냥 해도 청주시 지역사회에서는 2개되는 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간사 광정수**

한 가지 부연해서 한번 질의드리면 그럼 공모를 할 때 초등학교 이름을 몇 가지 예시를 하고서 그 중에 많은 쪽으로 한 건지 그 방법 좀 한번 알려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신설되게 되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를 신설을 하게 된다 이에 학교이름을 공모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는 분들은 내달라 그래서 불특정한 이름으로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박정수

불특정한 이름으로 제안을 받은 것 중에서 다시 주민의견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는 그게 제시가 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박정수

무슨 무슨 이름이 불특정한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중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더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여론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한 결과를 도교육청에 주면 도교육청에서 간부회의에서 또 저희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간부들이 대개 이런 이런 방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경우는 경합이 많이 되는 경우는 전례를 보면 간부들마다 오엑스(○,×)를 치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일 표가 많은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 큰

이견이 없는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1차에서 온 걸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간사 박정수

제가 교명에 대해서 자꾸 여쭙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강서지구에 현암초등학교가 아마 처음엔 초등학교였다가 분교였다가 폐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현암초등학교 동문회 이런 쪽에서 강서1지구에 하는 학교를 현암초등학교라고 그러는 교명을 주면 자기들이 마음의 고향처럼 또 그 학교가 현암초등학교라고 교명이 된다고 그러면, 역사도 승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어떻게 고려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거 제가 학교명 공모한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암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성남초로 해 가지고 교명 공모를 했는데 4개 학교명이 공모가 됐습니다. 제일 많은 의견 제출한 것이 서현초 47.9%가 서현초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지초 26.3%가 했고, 현암초가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24.2% 현암초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순위가 세 번째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교명 선정할 때 제일 공모자가 많은 서현초로 이렇게 교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간사 곽정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현암초를 했던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교명에 신경을 썼다 하는 것을 아마 그분들도 이해해서 고마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교명을 지을 때 일단 지역여론을 들어보는 그 절차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종전부터, 요즘에 학교를 많이 세우기 시작한 2000년대 조금 지나서부터는 그렇게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 방법이 이름을 같이 짓는다는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명을 확정하는 것에 무슨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 법규에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냥 이렇게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키면 그것이 교명으로 정해지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곽정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을하신 이름이 같은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라는 하는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이제 이후에 사용과정에서 혼동을 하지 않도록 헛갈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야 이름이 같다하더라도 그렇게 혼동의 소지가 적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인터넷으로 학교 검색할 때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지역명이라도 붙여서 그런 혼동을 피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한자 명칭이 많을 때 다른 뜻의 한자를 쓸 경우에는 우리 한글로 야 동명이지만 뜻이나 그 한자 명칭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피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현초등학교 같으면 서녘 ‘서(西)’자에다가 뭐 슬기롭다 현명하다 할 때 ‘현(賢)’자 그걸 쓰는 걸텐데, 아까 분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남이라 그랬습니까?

● **간사** **곽정수**

성남시 분당구조.

● **김병우** **위원**

성남시 분당구

거기 서현초등학교는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한자가 저희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지역에 가까운 이름을 쓰고 저희들은 지역하고 관련이 없이 한자를 현명하고 이런 뜻으로 뜻을 이용한 그런 지명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굳이 동명은 아니다라고 위안을 할 수 있겠는데, 인터넷 검색과정에서는 앞으로도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확정하기 전에 바꿀 수

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청주를 넣어서 청주서현초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공립학교들이 지금 청주라는 지명을 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보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지을 때 청주라는 부분을 중복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붙이고 다만, 외부지역하고 너무 공통적으로 일반화되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만 붙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지명을 큰 청주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 또 그때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데하고 형평이 안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청주라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은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인터넷검색을 해보니까 성남의 서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성남서현초등학교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요, 또 그냥 서현초등학교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정말 정식명칭은

된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래 우리 같은 경우에 서현초등학교 이렇  
게 확정을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나 전국  
적으로 혼동이 있더라도 쓸만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단 청주시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존  
중을 하고 또 청주교육청에서 공모를 했  
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교육과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을 하는 것  
이 집행부의 방침이었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 문제를 자꾸 굳이 조목조목 따질 만  
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이후에 교명 지을 때 주민들한테  
여론을 조사를 할 때도 사실은 선택지를  
놓고 주민들이 택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를 제시할 때 사전에 검토가 그렇  
게 치밀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무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일 위원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단설유치원이나 병  
설유치원은 그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설립하는 취지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부분도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교  
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면성은 있습니다. 교  
육을 충실히 시키기 위해서는 단설 쪽으  
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합  
리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분리독립만이 가  
장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부 방침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예  
산과 절충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단설  
유치원을 많이 세워라 이런 방침이 명쾌  
하게 떨어진 건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의 경우 과거에  
는 학교에 유효부지가 있으면 그 학교 구  
내에 단설유치원을 세우되 울타리만 쳐서  
학교와 단설유치원을 구분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충주남산초등학교 부  
지 내에 있는 충주남산유치원 이게 단설

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한 만평되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남쪽에 한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유치원만 지어놓고 식당을 안지어줬어요 급식소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을 가로 질러가는데 한 300m 멀죠 유치원 원아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 우산도 제대로 못쓰고 그러는데, 기왕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멀다면 아예 단설유치원을 할 때 급식소까지 해서 유치원으로써 면모를 갖춰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독립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로부터 점심시간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급식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의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상 유치원들이 대개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유치원시설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설은 1회성이기 때문에 해줘도 관계없지만 거기에 많은 운영비와 더불어 학부형들 부담도 꽤나 많이 들어가야 되

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기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가나 이런 것이 기존의 학교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수에 따른 적정 가격이 결정되지만, 유아수가 적은 데에 식당을 단독 운영할 경우에 단독 운영경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부분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물론 급식소를 새로 만들면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조리보조원이라든지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반급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단설유치원을 지을 때 여유공간을 마련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종일반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간식도 먹여야 되고 늦도록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고려해서서 예산을 거기다가 넣어주면, 국가가 유아교육도 정상적인 우리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니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충주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그게 단설유치원으로 바뀐 건데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간에 학구에 따라서 원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충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충주 금릉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인데 하도 아이들이 많아서 3대1 4대1 간다고 합니다. 그 선발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데, 또 어떤 유치원은 아이들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버스만 사줬으면 되겠는데 사설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통학버스가 인솔해 다니는데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단설유치원이 아닌 병설유치원에도 버스배정 요구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원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세울 때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지역의 수용계획입니다. 원아들 수가 몇 명인데 현재 있는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발달과정을 보면 공립유치원보다 사설유치원들이 더 먼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사업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위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립의 구분이 없는 지역에 수용계획을 적정히 세워도 유치원을 세워도 공·사립간에 마찰이 적은 지역에 주로 세우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원거리 원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신설되거나 했던 데는

환경이 좋고 그런 데에는 서로 수요자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유치원 아동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원거리로 이렇게 보내주거나 하는 것은 공립학교 쪽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원아들만 수용할 경우에 많은 시설이라든가 또 교원들을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유치원 경우나 이런 경우는 썩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대로 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그 부분 문제에 저도 의견을 내고 싶은 생각인데요.

충주남산유치원은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참 딱해요. 300m이상을 비오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6학년들이나 5학년 같으면 괜찮은데 유아들이라 이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몰고 300m를 가려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1학년들도 같이 있는데 제 그때 생각에 급식소를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 남산학교 1학년들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그때 해봤습니다.

그걸 이상일 위원님이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 의견에 같이 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통학버스문제 공립유치원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계셨는데 사실은 군마다 한 군데 정도는 버스를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는 학교하고 안지원하는 학교하고 영 다릅니다. 이게 원아모집하는데 없는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남산유치원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현실을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드리겠습니다.

버스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안타까움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학교에서 버스로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입하기를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학의 반발이라든가

사학의 불평도 있을뿐더러, 이게 정확히 초·중·고등학교마냥 학구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너무 불러 일으키거나 그랬을 경우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버스를 깊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 김부웅 위원

조례하고 관계없는 자꾸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진천의 경우에 보면은 공·사립간에 거의 갈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유치원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행정질의 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한 대답은 아직 안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제가 단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중전에는 단설유치원이 교육부 국고지원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단설유치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비봉유치원하고 산남유치원은 저희들 순수한 도비 재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가 단설유치원 설립방향을 확대해나갈 건지 그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계획은 유동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분교장 통폐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과 가좌분교장이 오창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분교장이 폐교가 될 때는 원 소속학교로 합쳐지는 게 맞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좌분교장 같은 경우는 비봉초등학교가 통학거리가 나올 거예요. 혹시 검토를 해보신 사항인지 아니면 원 본교로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순수한 거리나 이런 거는 제가 현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시킬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또 통폐합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근수단을 기존에 있는 통근수단보다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통폐합되는 학교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은 다소 가깝더라도 통학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먼 소재지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을 아마 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서수웅 위원

제가 여쭙보는 것은 그렇게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고 이쪽저쪽에 통합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학부모 의견이 거기 가좌분교장은 통폐합에 100% 찬성을 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거리상으로는 비봉초가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비봉초를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를 2회를 갈아타야 되는 입장이고 오창초는 1회 승차하면 가는 입장이고, 거리는 오창초가 6km이고 비봉초가 3.5km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오창초로 통합을 원했습니다.

● 서수용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혹시 그냥 행정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그리 하면 문제가 없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인 학생이 전학·퇴학·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중인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에 휴학을 추가하며, 둘째로 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며, 셋째로 현재의 학교급식에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운영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공동조리학교에 급식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학교의 경우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북은 그렇게 개정조례가 되어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소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례 개정하려는 그 부분 외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소위원회는 중요성 때문에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급식이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아마 전체 회의보다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급식을 하는 학교에 급식을 하지 않은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제안할 때는 단순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지침상으로 정하고 조례에는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은 대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현실에는 적합하고 또 너무 세부적으로

정해 놓으면 다음에 변화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점은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시·도에 광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아주 딱 맞게 정한 시·도도 있고, 아니면 거시적으로 굵은 선만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침이나 양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 **간사 광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부웅 위원**

지금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가 되기하고 안되기도 하는 부분이라, 제7조 1항 보시면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임한다는 요 조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학교에서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이게 별 관계가 없는 데, 시골에는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 모시기가 썩 쉬운 일이 아닌데, 3회 연속 불참했다고 당연퇴임시

킨다고 그러면 아마 반도 더 안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개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3회 연속이라는 건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학교에서 운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게 그냥 3회 연속 빠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 때문에, 대개 운영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고 교장선생님 이하 참모들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가 있겠으나,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거나 날짜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개 구두라도 내가 이만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노라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무단으로 이렇게 빠지시거나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한번 요런 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수웅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여기 운영위원회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하고서 여기다가 의무조항 한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골학교는 애들이 3,40명되는 학교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동급식학교는 조리를 하는 학교만 두면 되지 거기서 운반하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인데, 거기까지 둔다는 거는 너무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위원회가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도 일선학교에서 받아들일 때는 잡무로 받아들여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집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해서 아까 우리 객정수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신 제주도였던가요 그런 예를 참고해서, 합동급식학교는 조리하는 학교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협력학교에서는 한 두 사람 참여하는 걸로 소위원회를 둔 걸로 간주하면 안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서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는 조례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

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더 적합한 조례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현장을 많이 방문하셨고 또 현장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한 거의 4,5개 시·도는 그냥 저희들 안대로 했고 나머지 시·도는 세부적으로 했고 또 앞으로 이걸 조정할 그런 시·도도 아마 반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강제규정은 아니고 얼마든지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심의안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현실적으로 일선학교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구수정을 약간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부분에 저도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지침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원칙과 단서조항을 구분해서 조례에 다

답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게 있는데 지금 운영과장님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학운위조례에 담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관리국장 회의하고 학교지역보건급식과 공문에 의해서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과에서 지금 요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내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급식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두도록 한 법적 근거는 사실은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그것에 교육부령의 시행규칙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법규는 그 세 가지 법과 시행령과 교육부훈령, 규칙 거기에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 그 시행령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를 학운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둔 시·도도 있고 두지 않은 시·도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다 두어

라고 하니까 강제규정을 조례로 확정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셨겠죠, 교육부에서는.

근데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담아서 이미 많은 시·도가 추진을 했는데 우리 시·도는 조금 뒤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사실은 급식소위원회를 학운위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미리 있었다라면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했을 텐데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침이 내려오고서 좀 뒤늦게 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육부에서 임의조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지만 하도록 방향을 잡은 건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도 뒤늦었지만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두되 다만 소규모학교나 공동급식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강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단서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아까 서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 김병우 위원

그 부분은 약간 정회를 해 가지고 좀 조문을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서수웅 위원

조금 더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일정 시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무

지금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 수정동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곽정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

와 공동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 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

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간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정 무, 간사곽정수,

위 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7. 12. .

위원장 정 무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7. 11. 16. (금)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7. 11. 19. (월)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